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위기상황 발생 시 임시회 집회〉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48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진 · 민병덕 · 이해식 · 장종태 · 문진석 · 박 정
김재원 · 복기왕 · 윤후덕 · 김종민 · 한창민 · 안태준
강득구 · 서삼석 · 정혜경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6. 3. 5.

3. 회 부 일 : 2026. 3. 6.

※ 의안번호 : 1724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12·3 계엄 당시에는 다행히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음.

그러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최소 1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 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Ⅲ.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집회공고를 ‘집회기일 3일 전’에 하고, 예외적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의 발생 시 공고 시기를 ‘집회기일 1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유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경우 공고 시기의 제한 없이 즉시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위기 상황의 유형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5조(임시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집회기일 1일 전</u> 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 <u>임시회를 즉시 집회할</u> -----.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1.·2. (현행과 같음)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	

현행	개정안
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신설> ③ (생략)	3. 계엄이 선포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국회의 회기란 국회가 의사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집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의 활동기간을 의미함. 회기가 연중 계속되는 상시회기 방식과 달리, 우리 국회의 경우 제헌 국회부터 현재까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집회하는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집회하는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¹⁾

이 중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100일간 집회하며, 정기회의 집회공고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임시회의 경우와 동일하게 집회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집회기일 3일 전까지 공고하고 있음.²⁾

임시회는 집회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까지 집회공고를 해야 함.³⁾ 다만, ①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였거나,⁴⁾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1) 「대한민국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국회법」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7.), p.27, 실무상 집회공고는 국회 정문에 설치된 게시판 및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3) 「국회법」 상 임시회 집회공고 시기의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음.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⁵⁾를 이유로 임시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음.⁶⁾

집회공고는 의원들에게 집회의 소집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출석 및 의정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전통지 절차임. 그러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행 규정상 임시회를 열기까지 최소 1일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⁷⁾

이에 개정안은 1일의 사전공고 기간을 삭제하여 긴급 상황에서 임시회를 즉시 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기 상황의 유형에 “계엄이 선포

국회법	임시회 집회공고	예외
법률 제5호(1948.10.2. 제정)	집회 7일전	
법률 제2243호(1970.12.31.)	집회 7일전	대통령 집회요구 시 집회 2일전
법률 제3092호(1977.12.31.)	집회 3일전	대통령 집회요구 시 집회 2일전
법률 제3360호(1981.1.29.)	집회 3일전	(예외규정 삭제)
법률 제6266호(2000.2.16.)	집회 3일전	국가위기상황 시 집회 1일전

공고 시기의 단축은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의원들이 집회 소집을 인식하고 출석할 수 있는 시점이 빨라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4) 이는 헌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요건과 관련된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5) 이는 헌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계엄선포 요건과 관련된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6) 국가비상사태 등을 이유로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한 예는 다음과 같음. 제19대국회 제340회(임시회)는 2016년 2월 5일 원유철·이종걸의원 외 246인으로부터 2016년 2월 11일을 집회일로 하는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집회기일 6일 전에 공고하였으나, 국가비상사태(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2016년 2월 9일 기존의 집회요구를 철회하고 2016년 2월 10일을 집회일로 다시 집회요구서를 제출하여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하였음.

7)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12월 4일 0시 47분에 본회의가 개의되고 같은 날 1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등 170인, 의안번호 제2206197호)」이 상정되어 재석의원 190명(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당시 국회가 비회기 중이었다면 집회요구 및 공고 등의 절차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었을 수 있음.

포된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포함한 국가적 위기 발생 시 국회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⁸⁾

현행법상의 공고 기간은 의원들의 원활한 출석과 회의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위기 상황에서 즉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여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큰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과 집회 소집의 절차적 안정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겠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경우 문언상 집회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고 후 즉시 집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주요국 의회의 회기 제도를 살펴보면, 상시회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과 달리 프랑스 및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정기회는 집회 10일 전 공고하도록 규정한 반면 임시회에 대해서는 공고 시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8) 다만,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계엄선포의 요건이라는 점에서, “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현행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2] 주요국 의회의 회기 제도⁹⁾

회기	국가	내 용
상시 회기	미국	☐ 연방 수정헌법은 “의회는 적어도 매년 한 번은 소집되며, 그 회기는 의회가 법률로 다른 날을 정하지 않으면 1월 3일 정오에 시작한다”고 규정(제20조) - 회기는 통상 1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국경일 등을 중심으로 지역구 활동기간을 정해서 휴회함
	영국	☐ 별도의 규정 없이 1년 단위로 회기를 운영 - 통상 매년 5월부터 시작하되 총선이 있는 경우 총선 직후 회기를 시작함 - 휴회 중이라도 정부의 요구가 있고 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집회일시를 정하여 공고함
	독일	☐ 별도의 규정 없이 임기 중 상시 회기를 운영 - 회기의 개회 및 폐회는 연방의회가 결정하며, 상시 회기라고 해도 통상 한 달에 2주간 본회를 하고 2주간은 의사일정이 없는 방식으로 운영
정기회·임시회 구분	프랑스	☐ 헌법에 따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 정기회는 매년 10월 첫 번째 평일에 개회하여 다음 해 6월 마지막 평일에 폐회하며, 회기 일수는 120일 이내임 - 임시회는 총리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12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되며, 개회 및 폐회는 대통령령으로 공포됨
	일본	☐ 헌법에 따라 정기회, 임시회 및 특별회로 구분 - 정기회는 매년 1월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내각의 결정에 따라, 특별회는 총선 후 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집됨 - 집회공고의 경우 정기회는 집회일 10일 전까지, 임시회 및 특별회는 공고 시기에 제한이 없음

※ 각 국가는 모두 하원을 기준으로 함

문 의 처

02)6788-5014

9) 국회입법조사처 회답(2026.3.30.) 및 전진영, “주요국 의회의 연간 의사운영과 의장의 권한”, 「NARS 현안 분석」 제78호(2019.10.29.), 국회입법조사처 참조